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상정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식산업과장 강 덕 면)

### 가. 제안이유

- 우리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구성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담당국장, 시의회 의원,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9조 신설)
  -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건의 및 심의
  -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클러스터 구성 차원에서 볼 때 위원회 구성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클러스터 차원에서 위원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함.
○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의 위촉 차원에서 25명 정도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 다양한 분야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25명의 위원 위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수를 25명 정도로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됨.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73호
의결 년월일	2005. 5. 19 (제119회)

제안년월일 : 2005년 5월 16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 17인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위원회 위원 “17인”을 “25인”으로 조정함  
(안 제8조제2항)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17인”을 “25인”으로 한다.

##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p> <p>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중·소벤처 기업육성위원회가 대행 한다.</u></p> <p>③ <u>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8조(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식기반산업 업무 담당 국장과 시의회 의원,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8조(부천시지식기반 산업육성위원회)</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25인.....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수정안 포함]

##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를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식기반산업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원,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사업

2.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중전의 제9조)중 “지방재정법·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



전특별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진흥기본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며, 제7조중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중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조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제20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u></p> <p>제8조(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p> <p>① (생   략)</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부천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u>대행한다.</u></p> <p>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p> <p>&lt;신   설&gt;</p>	<p><u>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u></p> <p>제8조(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p> <p>① (제1항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식기반산업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원,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 관련 사업</li> <li>2.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li> <li>3.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u>&lt;신설&gt;</u></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lt;신설&gt;</u></p>	<p>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li> <li>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li> </ol>
<p>&lt;신설&gt;</p>	<p>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lt;신설&gt;</p>	<p>제14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한다.</p>	<p>제15조(준용) ----- ----- 「지방재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0조(시행규칙) (생략)</p>	<p>제16조(시행규칙) (중전의 제10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b>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b></p> <p>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3. (생략)</p> <p>4. <u>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u></p> <p>5. <u>만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재정 지원</u></p> <p>6. (생략)</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u>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④ (생략)</p>	<p><b>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b></p> <p>제14조(위원회의 기능) ----- -----.</p> <p>1.~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중소·벤처기업</u>----- ----- -----.</p> <p>④ (현행과 같음)</p>